



제294회 정례회

2010. 9. 6.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변 호	26
------------	----

제출연월일 : 2010. 9.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9. 1.

1. 제안이유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유치원사 신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 사업기간 : 2010 ~ 2011
- 증축위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727 / 오송고등학교 부지내
- 규 모 : 1,420m² / 100명 수용(학생정원 840명 / 24학급)
- 소요예산 : 2,342,200천원
- 사 유 : 학교신설(2012. 3. 1.자 개교예정)에 따른 학생 기숙사 증축

나. (가칭)금왕유치원사 신축

- 사업기간 : 2010 ~ 2011
- 신축위치 :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5 / (가칭)금왕유치원 설립예정부지
- 규 모 : 1,804.5m² / 7학급 120명 수용
- 소요예산 : 3,814,590천원
- 사 유 : 단설유치원 설립(2012. 3. 1.자 개원예정)에 따른 유치원사 신축

다. 영춘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 사업기간 : 2010 ~ 2011
- 증축위치 :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 / 영춘초등학교 부지 내
- 규 모 : 1,188㎡
- 소요예산 : 2,136,509천원
- 소요재원 : 교과부 특별교부금 1,495,000천원, 단양군보조금 641,509천원
- 사 유 :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4. 검토의견

가. 오송고 기숙사 증축

- 오송고등학교(학생정원 840명/24학급)는 2012. 3. 1.자 개교 예정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신설 중에 있으며, 학교신설과 함께 최적의 학습 환경 시설인 기숙사를 갖추므로써 향후 침복단지로 이전할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 또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하숙 등에 따른 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오송고 기숙사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가칭)금왕유치원사 신축

-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참고

다. 영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영춘초등학교는 충북의 최북단 영춘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농현상에 따라 영춘면 관내에 남은 유일한 초등학교임.
- 현재 6학년 88명이 재학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우천 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 의 각종 교육·문화 활동으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농촌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기대에도 부응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